

문서번호	안전치수과-302 8
결재일자	2016.2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기전팀장	안전치수과장	건설안전교통국장
이범구	김태희	함명수	02/26 김희동
협 조			

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



2016.2.26.

강 북 구

2016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

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전쟁·재해 등 비상사태시 대체용수로 활용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배경

-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방안
 - 서울시 물순환정책과-2935(2016.02.11)

II 시설현황

(2016. 1월 기준)

구 분	계	정 부 지 원 시 설			공 공 시 설			민 간 지 정 시 설		
		소 계	음용수	생활용수	소 계	음용수	생활용수	소 계	음용수	생활용수
시설 (개소)	30	5		5	1		1	24		24
급수량 (톤/일)	3,727	1,800		1,800	95		95	1,832		1,832

- 정부지원 시설: 정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설치한 전용시설
- 공공 및 민간지정 시설: 공공기관, 민간인 소유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

III 관리계획

1 시설물 분야

■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

- 정부지원시설(5개소)
 - 시·자치구 합동점검: 연 1회
 - 구(안전치수과) 자체점검
 - 점검주기: 정부지원시설 월 1회
 - 점검내용: 비상발전기, 모터펌프 정상 작동여부 등
- ※ 정기적으로 모터펌프 월 1회이상 최소 15분간 작동(수질 오염방지)

- 민간지정시설(24개소) 및 공공지정시설 생활용수(1개소)
 - 점검기간: 정기수질검사(상·하반기)와 병행 실시
 - 점검조치: 시설 부적합 판단시 소유자에게 개선 권장
 - ※ 미이행시 민방위 담당부서에 지정해제 요청

■ 시설장비 유지관리 실시

- 관리분야: 고장 수리, 건축물 환경개선 등
 - 대 상: 정부지원시설 5개소
 - 사업비: 5,000천원(시비 50%, 구비 50%)

■ 비상급수시설 운영능력 제고

-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 실시(정부지원시설)
 - 안전치수과 주관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: 연 1회
 - 교육내용: 비상발전기, 모터펌프 등 작동 방법
- 동별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 공유(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)
- 비상급수시설 시건장치 공동 보관(구청 및 동 주민센터)
 - 비상급수시설 시건장치 열쇠를 통일하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동 보관
-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
 - 관리책임자: 정(동장), 부(동 민방위 담당)

■ 동절기(당해 년도 12월 ~ 익년도 2월) 시설물 관리

- 발전기, 펌프 및 급수배관 등 동파방지 조치
 - 물탱크 및 급수배관 퇴수, 급수배관 및 유량계 열선 및 보온재 처리

■ 활용 불가 시설에 대한 조치

- 수량부족이나 수질 부적합 등으로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지정 해제 요청(민방위 부서와 협의)
 - 정부지원시설: 익년도에 원상복구 처리 예산을 편성하여 조치
 -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: 민방위 부서에 지정 해제 요청

2 수질분야

■ 민방위 비상시설 수질관리

- 수질검사 기준
 - 음용수: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2조 “별표1”
 - 생활용수: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“별표4”
- ※ 2016년 2월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지하수관정은 없음

■ 음용수 수질검사

- 검사횟수: 연 4회(전항목 1회, 부분항목 3회)
- 검사대상: 없음
- 검사항목 및 시기
 - 전항목(46개 항목)검사: 4월(2/4분기)
 - 부분항목(6개 항목)검사: 2월, 8월, 11월(1/4분기, 3/4분기, 4/4분기)
- ※ 부분항목: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대장균(또는 분원성대장균군), 암모니아성질소, 질산성질소, 과망간산칼륨소비량
- 검사기관: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(전 항목 검사), 강북구 보건소(부분항목 검사)

■ 생활용수 수질검사

- 검사주기: 3년 1회
- 검사대상: 총30개소 중 9개소
- 검사항목: 19항목(지하수 생활용수 기준)
- 검사시기: 상반기(3월), 하반기(8월)
- 검사기관: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

■ 수질검사 기준 초과시설 관리

- 미 개방시설(음용) 및 생활용
 - 이용중지 및 관정소독, 펌핑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
 - 재검사 결과 『적합』 한 경우에 이용토록 조치

○ **반복적 수질 불합격 시설 조치사항**

- 연속 3회 이상 부적합시 음용수는 생활용수로 용도변경 하고, 생활용수는 원상복구
(정부지원시설) 또는 지정 해제(공공 및 민간지정)

IV 행정사항

■ 민방위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

- 비상급수시설 변경(양수능력 등)시 민방위 부서에 즉시 통보
- 비상급수시설 지정 및 해지 사항은 민방위 부서에 확인 후 시설관리

■ 수질검사 실적 제출 : 서울시 물순환정책과

- 음 용 수
 - 부분항목검사: 검사(2월, 8월, 11월)후 매 반기말까지(6월, 12월)
 - 전 항목검사: 6월 30일까지
- 생활용수 : 상·하반기(6월, 12월) 실적 보고시 일괄 제출

■ 비상급수시설 업무별 관리부서 운영

- 시설 및 수질관리 : 안전치수과(기전팀)
- 시설 확보·지정·해제 : 자치행정과(민방위팀)

- 별 첨: 1. 비상급수시설 현황 1부.
2.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.
3.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.
4.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. 끝.